##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

제1조(명칭) 본 운영세칙은 한국품질경영학회(이하 학회)의 차차기회장 선거 시행 과정에 관한 것이다.

제2조(목적) 본 운영세칙은 차차기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.

#### 제3조(선거관리위원)

- 1.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2. 학회장은 차차기회장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진행할 선거관리위원장 (이하 위원장)을 학회의 부회장 이상에서 임명한다.
- 3. 위원장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원을 4명 이내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.
- 4.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차차기회장이 총회에서 인준 받는 시점까지 한다.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- 5.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차차기회장 선거를 진행한다.
- 6.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, 비공개할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
- 7. 위원장은 진행사항을 필요시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차차기회장 인준 전에 경과보고를 한다.

#### 제 4조 (선거관리 절차)

차차기회장 선거는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.

- 1. 회장 임기 2년차 마지막 정기 이사회 30일 전에 차차기회장 선거를 알리고, 차차기회장 후보 (이하 후보) 모집을 공고한다.
- 2. 위원장은 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한다.
- 3. 후보자의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됨을 알리고, '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'를 받는다(별첨 1).
- 4.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서류를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.
- 5. 선거관리위원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며, 필요한 경우 후보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.
- 6. 이사회에서는 차차기회장 1인을 선정해 총회에 추천한다.
- 7.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함으로 차차기회장으로 확정한다.

#### 제 5조 (후보등록)

- 1. 선거관리위원 이외의 정회원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.
- 2. 후보를 희망하는 회원은 학회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(추천자 사인 혹은 날인 포함)과 A4 1 페이지 이내에 자신의 이력 및 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을 적어 학회 사무국에 메일로 송부한다.
- 3. 학회임원 중 부회장, 총무, 그리고 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하면 그 직을 자동 사퇴한다.
- 4. 후보로 등록한 정회원은 윤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.

#### 제 6조 (선거)

- 1. (단수 후보)후보가 단수인 경우, 회장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.
- 2. (복수 후보) 후보가 복수인 경우, 투표를 실시한다. 회장은 최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를 총회에

차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한다.

- 3. (투표)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.
- 4. (감사) 투표가 실시되면 감사는 참관인으로 투표과정을 감시하고, 투표결과 발표 전에 감사과 정을 학회장에 보고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제3조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록1: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

### (양식-1)

# 공정한 선거 약속 이행서

본인은 한국품질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선거에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 겠음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후보자 : (날인 혹은 사인)

### 2020년 10월 23일 총회 의결사항

수정조항	수정 전	수정 후	사유
세칙 제9호 차차기 회장 선거 운영세칙	제 6조 (선거) 1. (단수 후보)후보가 단수인 경우, 회장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. 2. (복수 후보) 후보가 복수인 경우, <del>이사</del> <del>회에서 후보자들의 출마 소견을 듣고</del>	2. (복수 후보) 후보가 복수인 경우, 투표를 실시한다. 회장은 최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를 총회에 차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한다. 3. (투표)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온 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한다. 3.4. (감사) 투표가 실시되면 감사는 참관	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서 만든 온라인투표시스템 을 활용해 투표하는 것으로 개정

### 2021년 7월 5일 개정사항

수정조항	수정 전	수정 후	사유
세칙 제9호 차차기 회장 선거 운영세칙	제 4조 (선거관리 절차) 4.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서류를 <mark>이사회 1</mark> <del>주 전까지</del> 투표권을 갖는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.		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이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음
	제 6조 (서거)	제 6조 (선거) 3. (투표)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투표 를 진행한다.	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서 학회장 선거 관련 온라인 투표시스템 기능을 민간 업체에 이양하였음